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2136
- 발 의 자 : 김소양 의원 외 15명
- 발 의 일 : 2021년 2월 4일
- 회 부 일 : 2021년 2월 9일

2. 제안이유
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1.1.5.)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, 이 경우 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 3조제1항).

-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

다. 입법예고(2021. 2. 16. ~ 2. 23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)의 개정(2021.1.5)사항¹⁾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로써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(안 제3조제1항), 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).
-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바, 법령 및 조례와의 체계성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하겠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<u>서울특별시</u>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</u>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1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·교육·취업·주거·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또한, 동 개정안은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바,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특히,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지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, 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※ 개정이전 법령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가 중앙정부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는 상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사실상 기관위임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음.

[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 : 6,987명('21.1.1 기준)] (단위 : 명)

구 분	'21.1.1	'20.1.1	'19.1.1	'18.1.1	'17.1.1
서울시	6,987	7,092	7,020	6,966	6,905
비율(%)	22.2	22.8	23.4	24	24.7
전 국	31,513	31,003	29,950	29,061	27,847

※ 서울시가 전국 31,513명의 22.2%로 경기도 33.7%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며 서울거주 비율은 매년 감소추세임.

연번	시도명	계	남	여	비율
	계	31,003	8,062	23,451	100.0%
1	경기	10,615	2,682	7,933	33.7%
2	서울	6,987	2,179	4,808	22.2%

3	인천	2,989	781	2,208	9.5%
4	충남	1,621	342	1,279	5.0%
5	충북	1,645	259	1,086	4.3%
6	경북	1,093	219	874	3.5%
7	경남	1,081	246	835	3.4%
8	부산	982	256	726	3.1%
9	강원	860	219	641	2.7%
10	대구	663	140	523	2.1%
11	대전	599	131	468	1.9%
12	전남	649	159	490	2.1%
13	광주	588	132	456	1.9%
14	전북	534	117	417	1.7%
15	울산	500	125	375	1.6%
16	제주	313	67	246	1.0%
17	세종특별자치시	94	8	86	0.3%

- 다만, 상위 법령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)의 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 우리 사회에 적응·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규모와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[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도]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호 요청 및 국내이송 (해외공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호 요청 시 외교부,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•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•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
국내 입국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동신문 (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국 후 국정원,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•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호결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『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』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• 세대단위 보호결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하나원 정착준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적응교육 (12주, 392시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리안정, 우리사회 이해 증진, 진로지도 상담, 기초 직업훈련 • 초기정착지원 : 가족관계 창설, 주거알선, 정착금·장려금지원 등
거주지 전입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거주지 보호 (5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적 안전망 편입 (생계·의료급여 지급) • 취업지원 : 고용지원금, 무료 직업훈련, 자격인정 등 • 교육지원 :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• 보호담당관 : 거주지·취업·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민간참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• 지역적응센터 지정·운영 ※ 서울 4개 센터(동, 서, 남, 북) • 정착도우미제도 :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등 •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

- 특히, 현행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(6,987명)을 대상으로 생활기반 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자립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조례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시책 마련의 필요성 여부,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행정국의 세밀한 계획수립 등 조례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[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예산 편성 현황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'21년 예산액	비 고
총 계	1,983,460	
소 계	539,960	시비
▶서울시민 길라잡이 행사, 서울생활 안내서 제작 등	23,560	
▶기초생활 물품지원	151,200	
▶치과 치료	313,672	
▶건강증진사업 (대사증후군 검사, 마음돌봄 등)	51,528	
소 계	1,443,500	국비
▶지역적응센터(4개) 운영	1,329,000	
▶지역협의회 운영	114,500	

- 끝으로, 안 부칙에서 시행일(2021.7.6)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, 법률과의 부합성측면과 정책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	김태한	입법조사관	김정덕
------	-----	-------	-----